

[Redacted]

판 결

사 건

[Redacted]

공사대금

[Redacted]

손해배상(기)

원고(반소피고)

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 변호사

[Redacted]

피고(반소원고)

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

[Redacted]

변 론 종 결

[Redacted]

판 결 선 고

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13,9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7. 11.부터 2026. 1. 15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4,812,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8. 26.부터 2026. 1. 15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그중 1/8은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5. 제1,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